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6

발의연월일: 2024. 6. 17.

발 의 자 : 엄태영 · 서천호 · 유상범

김장겸 • 박충권 • 조경태

조지연 • 박덕흠 • 주진우

최형두 · 이종배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해외 진출기업에 대하여 이전 또는 복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 세연도부터 7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, 그 다음 3년 동안 은 50%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 1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평균적으로 19개사에 그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04조의24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6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4조의24(해외진출기업의 국	제104조의24(해외진출기업의 국
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) ①	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) ① -
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	
서 <u>2024년 12월 31일</u> 까지 국내	<u>2026년 12월 31일</u>
(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	
다.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	
에서 같다)에서 창업하거나 사	
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(증설한	
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	
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	
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	
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	
를 감면한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